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4 6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09가합77667 보험금

원 고 주식회사 〇〇

안성시 ○○

대표이사 박〇〇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) 로고스

담당변호사 전만수

피 고 1. ○○중앙회

서울 중구 〇〇

대표자 회장 최〇〇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
담당변호사 김성구

2. ○○ 주식회사

서울 중구 〇〇

대표이사 지○○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, 김태용

변 론 종 결 2010. 6. 11.

판 결 선 고 2010. 7. 2.

주 문

- 피고 ○○중앙회는 원고에게 315,060,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6. 12.부터 2010.
 2.까지 연 6%의, 2010. 7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피고 ○○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,561,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. 7. 17.부터 2010. 7. 2.까지 연 6%의, 2010. 7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○○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○○중앙회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○○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○○ 주식회사가 부담한다.
-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○○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의약품, 식품,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,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, 안성시 ○○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5층, 지하 1층 공

장(이하 '이 사건 공장'이라고 한다) 및 같은 리 ○○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지상 2층 공장건물(이하 '제2공장'이라고 한다)을 각 소유하고 있다.

나. 원고는 2008. 4. 18. 피고 ○○ 주식회사(이하 '피고 ○○'라고 한다)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, 보험가입기간을 2008. 4. 20.부터 2009. 4. 20.까지로, 보험가입금액을 이사건 공장은 500,000,0000원, 제2공장은 100,000,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 및제2공장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고 한다).

다. 원고는 2008. 11. 23. 피고 ○○중앙회(이하 '피고 ○○'이라고 한다)와 사이에 피공제자 원고, 공제기간 2008. 11. 23.부터 2009. 11. 23.까지, 공제가입금액 3,000,000,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에 대한 일반화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공제계약'이라고 한다).

라. 2008. 11. 28. 17:47경 이 사건 공장 3층 포장실의 냉온풍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(이하 '이 사건 화재'라고 한다) 3층 318,636,326원, 4층 161,109,896원, 5층 119,569,458원 합계 599,315,680원(=318,636,326원+161,109,896원+119,569,458원)의 재산손해가 발생하였다.

마.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미평가보험이고,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공장의 보험가액은 3층 1,015,259,439원, 4층 및 5층 각 649,423,684원, 기타층 2,716,948,222원 합계 5,031,055,029원(=1,015,259,439원+649,423,684원+649,423,684원+2,716,948,222원)이고, 제2공장의 보험가액은 675,609,837원으로, 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의 보험가액의 합계는 5,706,664,866원(=5,031,055,029원+675,609,837원)이다.

[인정근거] 갑4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

의 검증결과, 감정인 구본길의 감정결과, 주식회사 ○○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○○은 제2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공제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피고 ○○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의 보험가액은 5,706,664,866원으로 공제금액 인 3,000,000,000원을 초과하므로 제2보험계약은 일부보험이고, 피고 ○○은 상법 제 674조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599.315.680원에 이 사건 공장의 공제가입금액 할 것 2.644.831,165원[공제가입금액 3,000,000,000원×(이 사건 공장의 보험가액 5,031,055,029원/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의 보험가액 5,706,664,866원)]의 이 사건 공 장의 보험가액 5,031,055,029원에 대한 비율을 곱한 315,060,912원(=599,315,680원 ×2,644,831,165원/5,031,055,029원) 및 이에 대하여 피고 ○○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 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 ○○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. 6. 12.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. 7. 2.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 날인 2010. 7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약 2,000,000,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○○를 상대로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○○는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피고 ○○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및 제2공장의 보험가액은 5,706,664,866원으로 보험금액인 500,000,000원을 초과하므로 제2보험계약은 일부보험이고, 피고 ○○는 상법 제674조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599,315,680원에 이 사건 공장의 보험가입금액500,000,000원의 이 사건 공장의 보험가액 5,031,055,029원에 대한 비율을 곱한59,561,630원(=599,315,680원×500,000,000원/5,031,055,029원)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. 7. 17.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. 7. 2.까지 상법이정한 연 6%의, 그 다음 날인 2010. 7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피고 ○○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○○는 원고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이 사건 화재 당시 존재하지 않은 악성 완제품과 원료들을 이 사건 화재 후에 현장에 비치하여 마치 화재로 인

하여 훼손된 것처럼 허위로 손해액을 2,000,000,000원 상당으로 과장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화재보험보통약관 21조 제1항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○○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 ○○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○○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○○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임범석	
	판사	권혁준	
	단/기	C 1 C	
	-4 -1	-1-1-1	
	파사	김민경	